



상표권, 사수하라

우리는 보통 말한다. 권리 위에서 잡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언을 통해 법적 세상은 너무 냉정하다고. 그리고 항변한다. 모르고 잡았노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고 잡았다는데, 그러나 법은 냉정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지함을 탓하며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 인생 월사금을 지불하면서 또 배워야 하는 것을.

특히 심판원 심판관으로 심결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접한다. 진정 하늘에 하나님은 누가 정의인지 아실 것이지만 그 권리자가 무지로 침묵하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온당치 못한 승리자가 탄생될 때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몇 일전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처절하게 전화를 했다. 사연인즉, 상표권을 취득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큰 기업에서 변리사를 앞세워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또 취소심판을 청구해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매번 변리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도 힘들고...

이해가 간다. 상표권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시비를 걸어온다. 무엇하자고 이런지 이제는 불편한 감정만 남았단다. 자기 같은 조그만 업체를 처음부터 짹을 꺾어 버리려고 저러는 것인지 별생각이 다 들어 잠을 이룰 수 없단다.

상표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도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그 아주머니는 마음속 깊은 한숨만 내쉬며 선생님 같은 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서민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다.

몇십 년 전 농협창구에서 내 어린 손을 잡고 연체이자 를 면하게 해달라고 농협 직원에게 통사정하시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그 순간 떠오르며 가슴이 미어져 온다.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지만 이미 강자와 약자가 정해진 이후에 평등한 싸움이라는 것은 말장난만 같아 고개를 흔들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상표권을 사수하라. 지상명령처럼 말하고 싶다.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유념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먼저 상표출원 시 반드시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라는 것이다. 출원할 때는 A를 출원하고 사용할 때는 A'를 쓴다면 정당한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등록된 A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특히 결합상표(문자+도형 등)인 경우 등록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 하고 사용 시에는 각자 떼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역은 취소의 가능성성이 크다.

둘째, 출원해서 등록된 상표를 등록받은 지정상품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등록된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상표권은 사후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등록권자 자신이 그 상표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라도 그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등록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 준비 등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인정해서 취소시키지 않고 있지만, 3년이 넘게 사용하지 않고 장롱 면허처럼 보관만 하고 있다면 취소를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제3자가 당신에게 상표권을 내어 놓으라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특허청 민원실이나 변리사를 만나서 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상표권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권리를 갖는 것은 의무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말자. 그리고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미리 파악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자.

그래야 상표권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설프게 상표권을 획득했다가는 원하지 않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급기야는 감정싸움으로 벤져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그리고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이기에 당신이 선택은 해놓고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선의의 제3자가 그 상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은 허락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자.

상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피어난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므로, 그 꽃이 시들거나 병들지 않도록 잘 가꾸고 관심을 가져줄 때만이 진정한 꽃내음을 선사할 것이다. 국화 내음이 그리워지는 9월이다. 2012. 9 |



이승종 심판관
특허청 특허심판원